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3
----------	-------

발의연월일 : 2018. 11. 30.

발의자 : 김종석 · 정태옥 · 주호영
김승희 · 홍일표 · 김영우
박선숙 · 이주영 · 이종명
민경욱 · 김학용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 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의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 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 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로, “자를”을 “자 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실기주 과실에 해당하는 대금 등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로 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배당금·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예탁결제원이 관리한 대금 등

제20조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를 “금융회사 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로,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휴면예금”을 각각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중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관리계정의”를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휴면예금관리계정”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휴면예금: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이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2. 실기주 과실: 실기주 과실을 수령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주권의 발행인, 종류, 번호, 주식수 및 기준가액

3. 그 밖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및 휴면예금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제1호 중 “금융회사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42조 중 “휴면예금은”을 “휴면예금등은”으로, “목별로”를 “목별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으로”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본문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휴면예금을”을 “제2조제3호가목의 휴면예금을”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휴면예금”을 각각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휴면예금과”를 “휴면예금등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휴면예금</u>”이란 <u>금융회사의 예금등</u>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휴면예금등</u>”-----<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u>-----.</p> <p>가. 휴면예금: <u>금융회사의 예금등</u>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p> <p>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p>
<p><신 설></p>	

<p>한다.</p> <p>1. ~ 11. (생략)</p> <p>12. 제40조에 따라 <u>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u></p> <p>13. 제45조에 따라 <u>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u></p> <p>14. ~ 16. (생략)</p> <p>② ~ ④ (생략) 제7절 <u>휴면예금의 관리</u></p> <p>제39조(<u>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u>) <u>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u>휴면계정</u>”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제40조(<u>휴면예금의 출연</u>) ① <u>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u> ② <u>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u></p>	<p>---.</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 <u>금융회사등</u> 이 <u>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u> <u>휴면예금등의-----</u></p> <p>13. ----- <u>휴면예금등-----</u> ----- <u>휴면예금-----</u></p> <p>14. ~ 1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절 <u>휴면예금등의 관리</u></p> <p>제39조(<u>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u>) <u>휴면예금등을-----</u> ----- ----- <u>휴면예금등관리계정-----</u> ----- -----.</p> <p>제40조(<u>휴면예금등의 출연</u>) ① <u>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u> -----. ② <u>금융회사등은-----</u> -<u>휴면예금등을-----</u>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	---

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
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
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
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를 진홍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
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 <단서 삭제>

1. 휴면예금: 휴면예금등 원권
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휴면예금액. 이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
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2. 실기주 과실: 실기주 과실을
수령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주권의 발행인, 종류, 번호,
주식수 및 기준가액

3. 그 밖에 휴면예금등 원권리
자 및 휴면예금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

-----.

- 금융회사등으로부터-----휴면예금등

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 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 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 휴면예금등----- ----- 휴면예금등----- ----- 휴면예금등----- ----- 휴면예금등----- -----.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 른 휴면예금과 관련된 금융거 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 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 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 ----- ----- ----- 휴면예금등과-----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